

제193회 임시회  
2001. 10. 26(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문화관광국

관광건설위원회

##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1. 10. 26

관광건설위원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1. 10. 17)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주 준 길)

#### 가. 제안이유

-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도민의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위하여 설치한 센터가 도민들이 체력관련 시설인 헬스센터로 인식, 이용도가 저조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없으므로,
- 검진사업과 운동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능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함.
-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센터 위치를 “청주시 관내”로 하고  
“체력센터”를 “센터”로 조정함.
- 위·수탁기간 및 운영인력중 필요한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신설  
(제5조의2,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바, 이는
- 현재 청주시 운천동에 소재하여 운영중에 있는 도민체력센터가  
명칭 때문에 단순히 체력단련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주민의 이용  
도가 저조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 센터의 명칭을 검진사업과 운동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  
조례안

##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예방의학 차원에서 도민”을 “도민”으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이하 “체력센터”라 한다)”를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의 제목,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4호,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별표의 제목중 “체력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청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제2호중 “예방의학 차원에서 의학검진과 건강증진상담소 운영”을 “의학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수탁기간) ①위·수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운영실적 등을 제출한 때에는 도지사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센터운영 전문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체 육 분 야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를 운영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li> <li>- 공무원 4급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공직 경력자</li> <li>- 민간 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경력자</li> <li>- 전문대학 이상 체육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li> <li>- 체육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자</li> <li>-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li> </ul>
	운동처방사	· 생활체육 1급 자격증 소지자
	체력측정요원	· 생활체육 2급 자격증 소지자
의 료 분 야	의 사	· 의료법 제5조에 의거 의사면허를 득한 자
	간 호 사	· 의료법 제7조에 의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58조에 의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법 제4조에 의거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방사선사	· 의료기사법 제4조에 의거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도민의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이하 “체력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위탁운영..... ...		
	제2조(설치재원) 체력센터를 설치하는 재원은 국비, 도비 그리고 수탁관리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설치재원) 센터..... ..... ...		
	제3조(위치) 체력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71번지 오성빌딩 내에 설치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청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 체력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략) 2. 예방의학 차원의 의학검진과 건강증진 상담소 운영 3. (생략)	제4조(사업) 센터..... ..... 1.(현행과 같음) 2.의학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 3. (현행과 같음)		
	제5조(체력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체력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제5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 .....센터..... ..... .....		



현행	개정안
<p>또는 단체(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의한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관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신설)</p> <p>제6조(위탁운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내지 3. (생략)</p>	<p>.....</p> <p>.....</p> <p>② .....센터.....</p> <p>.....</p> <p>.....</p> <p>③ .....센터.....</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위·수탁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위탁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협약할 수 있다.</p> <p>②수탁자가 재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월전 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수탁자가 위탁운영실적 등을 제출한 때에는 도지사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 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6조(위탁운영의 취소) ..... ..... .....</p> <p>1.내지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4.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4. 센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의 변경)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또는 단체에게 변경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의 변경)..... ..... 센터.....
제8조(시설물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설치된 체력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임의변경 금지) ..... ..... 센터 .....
제9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체력센터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센터..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체력센터 운영 및 생활체육 관련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센터 .....
제10조(운영인력) 수탁관리자는 체력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인력) .....센터.. .....확보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현행	개정안
<p>제11조(손해보험가입) (생략)</p> <p>제12조(이용료 징수 및 조정) 수탁관리자는 체력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수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p>	<p>제11조(손해보험가입)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이용료 징수 및 조정) ..... 센터.....</p> <p>.....별표 1과..</p>
<p>제13조(운영 및 회계관리) ①수탁관리자가 하는 체력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운영 및 회계관리) ① ..... 센터.....</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익금 등 활용) ①수탁관리자는 매년 체력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 일부를 시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체력센터 운영 및 시설확충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4조(수익금 등 활용) ① ..... 센터 .....</p> <p>.....</p> <p>② ..... 센터 .....</p> <p>.....</p>
<p>제15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체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체력센터 운영이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간이 되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제15조(수탁관리자의 의무) .....</p> <p>..... 센터 .....</p> <p>.....</p>

현행	개정안
<p>제16조(감독) ①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체력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6조(감독) ① ..... ..... ...센터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좌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